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12. 9  
시민보건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4. 10. 12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4. 10. 24.
- 다. 상정일자 : 제25회임시회 제1차위원회('94.11.1.) 상정, 심사  
제26회정기회 제7차위원회('94.12.9.) 상정, 심사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가. 제안이유

최근들어 인구증가율이 1%이하로 둔화되는 추세에 있어 정부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가족계획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보급되었던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가징수합목을 삭제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수수료징수 항목 삭제(안 제2조제2항제2호, 별표)
-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수수료세입재활용 사항 삭제(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제2조 제2항중 “제2호”와 (별표)수수료액표중 “2.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란을 삭제하고 일부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 이는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최근들어 인구증가율이 1%이하로 둔화되는 추세에 있어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등 규정용 삭제하게 되었음.

○ 참고적으로 전국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1989년말 4,244만 9천명에서 1993년말 현재 4,405만 6천명으로 연평균 0.9% 정도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윤정용 위원) : 안 제4조 제1항을 삭제하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답변(김연호 보건지도과장) : 수수료만 삭제하고 기구보급은 보사부에서 한다. 수수료가 삭제되면 가족계획 요원 여비도 삭제된다.

○ 질의(이종일 위원) : 안 제4조 항 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의 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 답변(김연호 보건지도과장) : 실질적으로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만 하였고 장비구입은 하지 않았다.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4. 12. 9. 홍길표 위원 외 1인

나. 수정이유

- 안 제4조(세입재활용)에서 항 결핵제의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의 재활용범위를 규정한 것은 예산

회계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수정코자 함.  
 다. 수정주요골자  
 - 함 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의 용도를 강행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안 제4조)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4. 12. 9

제 안 자 : 시민보전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4조(세입재활용)에서 함결핵제의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의 재  
 활용범위를 규정한 것은 예산회계법상  
 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수정코자 함.

**2. 수정주요골자**

- 함 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의 용도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  
 정으로 수정(안 제4조)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본문중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결핵사업의 용도  
 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 4 조(세입재활용) ①피임약제 및 기	구보급 수수료의 70%는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수입으로, 30% 는 구수입으로 하며 시수입은 대한 가족계획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 보조 하여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하여야 하고 구수입은 가족계획요원 행정비 로 사용한다. 다만, 보건소에 근무 하는 자궁내 피임장치 시술요원이 시술하는 경우, 시술비를 구세입조 치하여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한다. 단, 자궁내장치수수료중 건당 1000원 은 전액불임시술 사후관리비(대한 불 임시술협회)로 사용한다.	제 4 조(세 입 재 활 용) 함 결핵제 보급으로 인하 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u>결핵사업</u> <u>이외의 용도에 사용하</u> <u>여서는 아니된다.</u>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 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 력 확보를 위한 장 비 구입 3.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기타 구청장이 필요	제 4 조(세 입 재 활 용) 함 결핵제 보급으로 인 하여 징수된 수수료 는 다음 각호의 <u>결</u> <u>핵사업의 용도에 사</u> <u>용하는 것을 원칙으</u> <u>로 한다.</u>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 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 력 확보를 위한 장 비수입 3.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②항 결핵계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 구입 3.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 사업비</p>	<p>하다고 인정하는 결핵 사업비</p>	<p>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 사업비</p>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레 제221호)

의안 번호	337
----------	-----

제출년월일: 1994. 10. 12.  
제 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4. 개정조례(안): 별첨

5. 예산조치필요성: 불필요

첨부: 1.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  
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1. 개정이유

최근들어 인구증가율이 1%이하로 둔화되는 추세에 있어 정부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가족계획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보급되었던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가징수 항목을 삭제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수수료징수항목삭제(안 제2조제2항제2호, 별표)
-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수수료세입재활용 사항삭제(안 제4조)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제15조, 제128조, 제130조
- 보건소법(1991. 3. 8. 법률 제4355호)제8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1993. 4. 23. 조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제2조 별표중 제2호, 제3호에서”를 “제2조별표중 제2호에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세입재활용)항 결핵계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 3. 우수 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기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 사업비  
 (별표) 수수료액표중 “2. 피임약제 및 기구 보급”란을 삭제하고 구분란중 “제3조 내지

제6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 2 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생략)                      ②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1. (생략)                      2. <u>피임약제 및 기구보급</u>                      3. (생략)                      4. (생략)                      5. (생략)                      ③(생략)</p>	<p>제 2 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제3호와 같음)                      3. (현행제4호와 같음)                      4. (현행제5호와 같음)                      ③(현행과 같음)</p>
<p>제 3 조(수수료 및 진료비면제) ①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p>	<p>제 3 조(수수료 및 진료비면제) ①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p>
<p>제 4 조(세입재활용) ①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의 70%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수입으로, 30%는 구수입으로 하며 시수입은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 보조하여 가족계획사업에 재 활용하여야 하고 그 수입은 가족계획요원 행정비로 사용한다. 다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자궁내피임장치 기술요원이 시술하는 경우, 시술비를 구세입조치하여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한다. 단, 자궁내장치수수료중 전당 1000원은 전액불임시술사후관리비(대한 불임시술 협회)로 사용한다.</p>	<p>제 4 조(세입재활용) ①항 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결핵사업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 사업비</p>

현행	개정안
<p>② <u>함 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결핵사업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u></li> <li>2. <u>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u></li> <li>3. <u>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u></li> <li>4. <u>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 사업비</u></li> </ol>	

현 행

(별 표)

수 수 료 액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생략)				
2. <u>피임약</u>	가. <u>먹는 피임</u>	1 <u>싸이클</u>	<u>230원</u>	· <u>가족계획요원 또는 대한가족계획 협회직원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먹는 피임약 330원, 콘돔 300원으로 하고, 이 중 100원은 실제 보급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u>
<u>제 및 기</u> <u>구보급</u>	약(21정 혹은 28정임)			
	나. <u>콘돔(6개 입)</u>	1 <u>갑</u>	<u>200원</u>	
	다. <u>자궁내장치</u>	1 <u>건</u>	<u>2,000원</u>	· <u>자궁내장치수수료중 건당</u> - <u>불임시술사후관리비(불임시술협회)</u>

개 정 안

(별 표)

수 수 료 액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현행과 같음)				
(삭 제)				

관행

개정안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u>: 1,000원</u> -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 : 1,000원 <u>으로 한다.</u>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삭 제)
2. (현행제3호와 같음)				
3. (현행제4호와 같음)				
4. (현행제5호와 같음)				
5. (현행제6호와 같음)				